

## 하나카드 제휴 후불 교통카드 약관

### 제1조(후불교통카드(RF기능)의 이용)

회원이 희망하는 경우 후불교통기능이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 교통기관 등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제2조(후불교통카드 이용대금 결제)

- ① 회원님께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누적금액을 월 1회(익월 10일,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최초 도래하는 영업일) 출금합니다.
- ② 제1항의 기일에 후불교통이용대금 등이 출금되지 않을 경우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날기\*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\*\*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출금기준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.  
\* 연체이자율 산정할 경우 출금기준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
\*\*지연배상금=(연체금액-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)×연체이자율(약정이자율+3%(연체가산이자율))×연체일수/365(윤년은 366)
- ③ 제2항의 ‘연체이자율’은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‘약정이자율’에 ‘연체가산이자율’을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\*됩니다.  
\*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체크카드 관련 연체(후불 교통 등): 6%(상사법정이율) + 3%(연체가산이자율)

### 제3조(이용대금 결제 시 제한사항)

금융기관 영업 마감시간 이후에 결제계좌에 입금되거나, 자기앞수표 입금 시 당일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4조(거래정지 등 해제 및 유예기간)

- ① 후불교통카드(RF 기능) 이용대금 연체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② 수령후 카드사용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(발급일로부터 10영업일 경과시 거래정지 등록).
- ③ 거래정지 등재(해제) 사유 발생 시, 해당 정보는 교통기관의 단말기에 반영되는 시점까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평균 2~3영업일이 소요됩니다.